

남포교회 남성성가대 회칙

제정 : 2019.06.01.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포교회 “남성성가대(이하 ‘성가대’)”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1. 본 성가대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남포교회의 수요예배 찬양을 담당한다. 또한 교회 공식 행사를 맡았을 시 이를 수행한다.
3. 본 성가대의 대원들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어간다.

제2장 대 원

제3조 (대원의 의무)

1. 대원은 예배위원으로서 은혜로운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성실히 예배를 준비한다.
2. 대원은 회칙과 제 규정 등 성가대의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3. 대원은 정해진 연습을 통하여 수요예배 찬양 및 절기에배 찬양 등 성가대 공식행사에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4. 대원은 찬양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장기 결석 시에는 파트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5. 대원은 대원 간에 상호존중과 배려를 하며, 화합을 깨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대원은 성가대 운영을 위한 회비 납부에 참여한다.

제4조 (자격 및 입회 절차) 성가대 대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원의 자격은 세례 교인으로서, 교회를 등록한지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찬양함을 귀하게 여기는 모든 남자 성도에게 주어진다.
2. 신입 대원은 성가대임원 및 지휘자의 요청에 따라 총원할 수 있으며, 파트배정은 본인 및 지휘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장이 결정한다.

제5조 (휴면대원 및 운영)

1. 대원이 건강 이상, 장기 여행 등 타당한 사유로 연간 20%(10주) 이상 성가대 봉사(찬양 연습 및 예배 찬양 기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나, 불출석이 예상되는 경우, 휴면대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2. 임원은 매년 2월에 그 해 활동할 성가대원의 총수(정회원 및 휴면대원)를 확정하되 그 운영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① 임원은 기존 정회원의 지속 활동 여부를 확인하며 성가대 봉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봉사 지속 여부, 휴면 전환, 탈퇴 등을 결정 한다.
- ② 임원은 전년도 휴면대원에게 해당년도 복귀 여부를 확인한다.
- ③ 임원은 신입 대원을 공지, 모집한다.

제6조 (자격 상실)

- 1.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대원의 경우,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원 자격이 상실 될 수 있다.
 - ① 사전 통보 없이 1년 이상 성가대에 불참한 경우
 - ② 교인 및 성가대원으로서 의무와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 ③ 본인이 탈퇴를 요청한 경우
- 2. 자격 상실 대상 대원은 소명할 수 있으며, 이 때 본인 소명서를 제출하면 임원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3장 조 직

제7조 (임원) 성가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지휘자 : 1명
- 2. 반주자 : 2명 이내
- 3. 대장 : 1명
- 4. 총무 : 1명
- 5. 회계 : 1명
- 6. 약물관리 : 1명
- 7. 음원관리 : 1명
- 8. 파트장 : 4명(각 파트별 1명)

제8조 (임원의 선출)

- 1. 대장은 전임 대장의 추천으로 교회에서 임명한다.
- 2. 그 외의 임원은 대장이 위촉하고, 피위촉자의 자발적 동의를 거쳐 선임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에서 다음해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대장의 결원 시에는 안수집사 및 임원 회의를 통해 위촉하며, 대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 시에는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 3. 후임 임원은 임기 만료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역할)

- 1. 임원은 예배 찬양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자의 지휘와 대원들의 연습 및 찬양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지 보살피고 돕는다.
- 2. 지휘자는 성가대의 음악적인 부분을 총괄 지도한다.

3. 반주자는 지휘자와 함께 연습 및 예배의 반주를 담당한다.
4. 대장은 본 성가대를 대표하여,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5. 총무는 대장을 보좌하며, 연습과 모임 관련 회의를 준비하고, 대장 유고 시 성가대를 대표하며, 전반적인 대원의 출결 및 제반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6. 회계담당은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모든 관리의 책임을 지며,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을 담당하며 임원 회의와 성가대에 이를 보고한다.
7. 악보담당은 연습 및 예배 관련 악보 지원 등을 담당하고 아울러 지휘자를 보좌하여 연습 및 연주 용 악보 편집 및 준비 업무 등을 담당한다.
8. 음원담당은 개인 연습에 필요한 음원을 제공한다.
9. 파트장은 각 파트를 대표하여 파트대원을 관리하며(출결 등) 각 파트에서 요구되는 사항 등을 점검 지원한다.

제11조 (지휘자의 임명) 지휘자는 교회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 (임원 회의) 임원 회의는 대장이 주관하며, 지휘자의 요청이나 성가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13조 (회계연도) 본 성가대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로 한다.

제14조 (관리) 본 단체의 모든 재정은 성가대 단체 명의로 수입, 지출되며 단체 명의로 제1 금융권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단 단체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시 임원 의결을 거쳐 회계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15조 (수입) 본 성가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총당한다.

1. 운영비 : 본 교회의 남성성가대 운영 예산으로 분기별 결산을 원칙으로 한다.
2. 회비 : 임원 회의에서 금액을 결정하며, 납부 방법은 연납 또는 월납을 병행한다.
3. 후원회비 : 지정 현금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은 분기별 결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지출) 제15조에 의한 수입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임원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용처에 지출하도록 하며, 성가대의 해산 시 모든 재정은 대원 개인에게 분배 및 지급할 수 없고,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되 그 사용처는 임원 발의 및 대원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1. 연습 및 예배 준비에 사용되는 비용
2. 기타 성가대의 공식 행사 및 준비에 부합되는 사용처로 임원 회의의 의결을 거친 사항

제17조 (회칙수정) 회칙수정은 남성성가대 대원의 발의로 임원회의를 통하여 정해지며, 성가대 재적인원 50%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